

# 국세청 전자문서 다운로드 매뉴얼

## 1. 홈택스 홈페이지(<https://www.hometax.go.kr>) 로그인



① 로그인 후, 'My 홈택스' 메뉴로 접속

② 연말정산·지급명세서 선택 →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



## 2.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자료 조회

Home tax 국세청홈택스    조회/발급    민원증명    신청/재출    신고/납부    상담/정보    검색    메뉴

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귀속연도 **2024년**    1월    2월    3월    4월    5월    6월    7월    8월    9월    10월    11월    12월    전체 불러오기

내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   상세보기    내려받을 문서에 개인정보를   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

공개안함     공개함     설정안함     설정함    내려받기    인쇄하기    정지받기

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	건강/고용보험	국민연금	보험료
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
의료비	교육비	신용카드	직불카드 등
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
현금영수증	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	주택자금/월세액	주택마련저축
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
장기합동투자증권저축/ 벤처기업투자신탁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기부금	장애인증명서
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	조회하기 Q

**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** 해주세요!

-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·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.
-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.
-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.
-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.
-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.
-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올해부터 처음 제공해요.
-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외에 제공하지 않아요.
- '23.12.31.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는 제공하지 않아요.

### ① 귀속연도는 반드시 2024년으로 설정

(’25.1.15일부터 ’24년 소득공제자료 확인 가능)

※ 과세기간 중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이후 해당 월만 체크

단, 과세기간 24년 기준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력입사자의 경우 제외

### ② 항목별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여 자료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

### 3.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자료 전자문서 다운로드



① 각 소득공제 건 별로 자료를 조회 함

③ 한번에 내려 받기 클릭



③ 내려받기 클릭 (※ 다음 페이지의 내려받기 시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!)

## - 내려받기 후 이메일 제출 시 유의 사항

### ①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금지

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해당자료 조회가 불가능하여 추후 재전송 및 추가확인절차로 인한 처리지연이 발생되오니,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

## - 인쇄 후 우편제출 시 유의 사항

### ① 인쇄 후 제출방법

소득공제자료 조회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'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'를 클릭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

## - 공통 유의 사항

### ①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제출자료에서 제외

본인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체크하지 마시고,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항목들에만 체크하시어 인쇄하십시오.

특히, 주택자금/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국세청 소득공제 증명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요구되는 모든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**(※ 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! 국세청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며, 추후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세금 추징!)**

주택자금의 경우, 세대의 주택보유수(무주택 혹은 1주택 보유), 주택 규모 (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), 주택 가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② 소득공제신고서 작성

- 연말정산 대상 임직원이 위의 내용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신 후 공지사항 內 '소득공제신고서'의 인적공제 항목에 인적공제 대상자를 기입한 후 (본인만 대상자라면 본인이름, 정보만 기입)인쇄, 제출해주십시오 (소득공제신고서 미 제출시 가족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)
- 공지사항 內 소득공제신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, **홈택스에서**도 인쇄할 수 있으니 해당자료를 필히 함께 제출해주십시오.  
(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-> 공제신고서 작성하기)